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2008. 11. 27
4차 개정 2019. 06. 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의 실험 동물 보호 및 그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한 본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동물실험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모든 연구, 조사 및 교육과 위원회의 운영에 적용한다. 단, 「동물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한다.

제3조(소관부서) 본 위원회의 운영은 **교무·연구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9.06.25)

제4조(위원회의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동물실험신청 심사에 관한 사항
2. 동물실험규정 및 시설 이용기준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시설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시설 실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동물실험과 관련된 제반 사항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본교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2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각각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0.)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3.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교수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에서 동물보호·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 ② 본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나, 결원에 의해 새로 위촉하는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의 해임이나 사임의 경우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신임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① 동물실험신청의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위원회 외부에서 자문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회무를 담당하고 동물실험신청 심의 및 통보 등에 관련된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③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권한 및 책임) ① 위원회는 동물실험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여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며, 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11.10.)

- 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심의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위원회는 시설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사항이나 시설이 윤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를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교내 동물실험시설을 점검·평가할 수 있으며, 시정 권고할 수 있다.(항 신설 2015.07.31)

제10조(심사) ① 위원회는 본교 내 모든 동물실험(시설), 그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자로부터 적절한 보고를 받거나 직접 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정과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신속, 정확하게 심사하고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1.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2. 실험담당자의 안전보호에 관한 대책
3. 실험동물종의 선정 및 사용 동물수의 적합성과 타당성
4. 저침습성 처치, 조직배양 등 대체방법에 의한 해당 동물실험의 대체가능성
5. 적절한 진정, 진통 및 마취법
6. 인도적인 실험종료 및 안락사를 취하기 위한 기준 설정
7. 동물실험 경험 및 훈련 여부
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심사와 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결과를 승인, 보완 및 수정, 부결로 결정한다.

④ 심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⑤ 심사와 관련된 행정절차상의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동물실험과 관련된 문서는 해당 연구가 종료된 이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항 신설 2015.07.31)

제11조(승인 및 조치) ① 동물실험 진행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책임연구자로부터 적절한 보고를 받거나 직접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실험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또는 동물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나 고통을 유발한 경우에는 동물실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동물실험의 종료를 확인하고 기타 동물실험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④ 연구책임자는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동물실험 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항 신설 2015.07.31)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기획예산과-1326, 2008.11.27)

이 규정은 200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717, 2013.10.31)

이 규정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410, 2015.07.07)

이 규정은 2015년 07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454, 2017.11.10)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330, 2019.06.25)

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